

『2026년 안산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안내문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3월 1일 (00:00) ~ 2027년 2월 28일 (24:00) (1년)
- 보 험 료 : 안산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안산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보장제외)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제외)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안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안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사고 사망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 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화상수술비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수술 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화상수술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만원 한도 (사고당/영수증 증빙)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 (사고당/영수증 증빙)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적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강도상해사망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상해후유장해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안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안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안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 **화상수술비**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비만 지급

○ **화상수술 치료비**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사고당) : 50만원 한도** **총보상한도 : 6천5백만원 한도**

※ **수술의 정의**

- ▶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개 물림사고 치료비 (응급 / 비응급)**

- ▶ 보험기간 중에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인당(사고당) : 300,000원 한도, 총보상한도 : 35,000,000원 한도**
-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보험금 지급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가) 제297조(강간)
 - (나) 제298조(강제추행)
 - (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라) 제300조(미수범)
 - (마)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 (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야)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자)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용어풀이

- ①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②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및 일사병 포함)

-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 과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가스사고 사망 / 후유장애

-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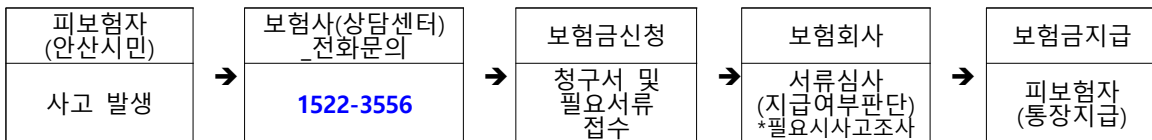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말소자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애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애 진단서(손해보험 보상청구용. 장애율 %)(뇌·신경계 : ADLs)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 기록지 ③ 진단서(심재성2도이상 기재 必), 수술기록지
화상수술 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화상발생 확인서류_초진 진료기록지, 진단서(심재성2도이상 기재 必) ③ 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진료비 상세내역서
개물림사고 (응급/비응급) 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 확인서류 _ 초진진료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 ③ 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진료비 상세내역서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③ 의사진단서 ④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_ 공소장 (약식기소시 : 약식명령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보상서류 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 동의서

※하기 문구 중 '당사': 메리츠화재,케이비손보,현대해상,디비손보,롯데손보,엠지손보,흥국화재 공용




-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

본 동의서는 요약 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 및 별도 보관)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4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민감정보(2개)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20개)	일반개인정보(17개)	신용거래정보(3개)
	성명, 주소 등	보험계약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8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금융거래기관, 보험회사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금융거래 업무,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 지원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요약 동의서

※하기 문구 중 '당사': 메리츠화재, 케이비손보, 현대해상, 디비손보, 롯데손보, 엠지손보, 흥국화재 공용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4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민감정보(2개)	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20개)	일반개인정보(17개)	신용거래정보(3개)
	성명, 주소 등	보험계약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1개)	<input type="radio"/>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input type="radio"/> 재보험금 지급·심사,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input type="radio"/>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6개)	일반개인정보(4개)	신용거래정보(2개)
	성명, 연령 등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4개)	<input type="radio"/>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input type="radio"/>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 및 별도보관)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4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민감정보(3개)	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조사기록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20개)	일반개인정보(17개)	신용거래정보(3개)
	성명, 주소 등	보험계약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본인 : (인)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인)

※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